

##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

의안	5-130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안자 : 동 두 천 시 장

### 개정이유

우리 시를 상대로한 민사 및 행정소송 증가 및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현행 2인인 고문변호사를 4인으로 확충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가. 시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확충함(안 제2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###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”를 “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2인 이내”를 “4인 이내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 안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기획감사실장 남 상 호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기획법무담당 김 홍 기
자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배 윤 중 860 - 2054, 2055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<u>2인 이내</u>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및 ③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4인</u> ----- <u>이내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및 ③ (현행과 같음)</p>